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6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회 사	KB증권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KB증권㈜ : 과태료 203백만원 부과*및 과징금 부과 면제

- 조치사유 : 가. 신용정보의 정확성·최신성 유지의무 위반
나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다.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라.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□ 직원에 대한 조치

○ 甲 : 과태료 18.5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신용정보의 정확성·최신성 유지의무 위반

□ 신용정보회사등*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

* 신용정보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을 포함하며, 증권사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 해당

○ KB증권은 2021.1.4.~2025.11.25.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 등록대상 신용정보인 기업신용공여정보* 및 연체정보**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대출 : 243건, 채무보증·채무인수 : 181건
** 연체정보(기업) : 14건

나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이하 '영업보고서')를 1년간 본점·지점·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

○ KB증권은 2021.2.15.~2025.2.14.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*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

*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, 최대 63일

다.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,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,

○ KB증권 A지점은 2021.7.1. ㈜ 채권 1건(2억원)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라.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·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,

○ KB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유형별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전화번호 등)로 분류하고, 이를 데이터변환 솔루션을 통한 변환 작업 이후 테스트에 사용하면서

○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수립·운용하여 2021.1.1. ~ 2025.11.11. 특정 유형의 이용자 정보(계좌번호, 생년월일)에 대해 변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있다.

마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,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, 매매명세를 분기별(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,

○ KB증권 B지점 부부장 甲*은 2006.3.15.~2023.8.23. 기간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(가족)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,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,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필요

4. 근거법규

(조치사유 가.)「신용정보법」 제18조 제1항, 제52조 제5항, 동법 시행령 제38조, <별표 4>,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<별표 3>

(조치사유 나.)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 제2항, 제44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90조, <별표 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

(조치사유 다.)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9조 제2항, 제6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51조, <별표 4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 3>

(조치사유 라.)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, 제51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, <별표 3>,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<별표 3>

(조치사유 마.)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, 제449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90조, <별표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<별표3>, <별표6>